

제334회 정례회
2014. 9. 30(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4. 9. 30 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6일

(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재길 경제통상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발전의 핵심 경쟁요소가 산업화 시대의 생산자원 확보 중심에서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적 과학지식과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고,

-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부응하여 확대되는 국가R&D 예산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-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&D 대응체계 구축 등 능동적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(안 제5조)
-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추진(안 제6조)
-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(안 제7조)
 -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및 사업수행 지원
-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9조 ~ 제14조)
 - 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, 위원 해촉 등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‘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’은 지역발전의 핵심 경쟁요소가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자원 확보 중심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창조적 과학지식과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,
-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과학기술

정책에 부응하여 확대되는 국가R&D 예산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
-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&D 대응체계 구축 등 능동적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
- 다만,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따른 4차년도와 5차년도 예산확보 방안과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연구개발사업”이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과학관”이란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.
3. “연구기관”이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출자·출연한 연구기관을 말한다.
4. “과학기술인 단체”란 도의 과학기술진흥 정책개발 및 신사업 발굴 육성 지원 등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중시하고 연구개발 강화, 산·학·연·관 협력 증진, 인력양성, 정책연구 및 신사업 발굴 기획연구 등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시·군, 교육·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·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·단체 등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과학기술진흥사업)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기술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
2. 과학기술 인력양성 사업
3.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 연구 사업
4. 과학기술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
5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사업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) ① 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과학기술 관련 경진대회 및 과학축전 등의 개최
2.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사업
3. 과학관 등 과학기술문화 시설 확충 및 육성 지원 사업
4.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)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관리·평가 지원
2. 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

3.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지원
4. 연구개발 관련 DB구축 관리
5. 연구개발 인력양성

6. 그 밖에 도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

③ 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의 평가)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, 지도·감독 및 평가결과,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설치)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과학기술진흥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
2.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
4. 도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
5. 신사업 발굴·육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통상국장 및 바이오환경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 전문

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과학기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 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전에서 제척될 수 있다.

제13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
제15조(비밀의 누설금지)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실비보상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포상)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제6조(등록) ① 과학관(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)을 설립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,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에게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소재지
4.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·주소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·주소)
5. 시설명세서
6. 과학기술자료의 목록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“이라 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(이하 “등록과학관“이라 한다)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.

□ 과학기술기본법

제7조(과학기술기본계획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
2.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,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 방향
3. 과학기술투자의 확대
4.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·융합연구개발 촉진
- 4의2. 미래유망기술의 확보
5.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강화
6.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, 기술창업의 활성화
- 6의2.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·육성
- 6의3.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, 경제적·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
7. 기초연구의 진흥
8.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
9.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
10.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·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
11. 지방과학기술의 진흥

12.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

13.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

14.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

15.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

15의2.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

15의3.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의 촉진과 그
기반의 조성

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.

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기업·교육기관·연구기관의 장,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)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(이하 “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의 지원

2.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

3.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

3의2. 지방의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

4.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

5.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32조(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)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연구회(이하 이 조에서 “연구회”라 한다)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.

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제8조(연구기관의 설립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.

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(연구 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

4.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

5. 공고의 방법

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별 표] <개정 2011.12.31>

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(제8조제1항 관련)

기 관 명	
1. 한국과학기술연구원	11. 한국표준과학연구원
2.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	12. 한국식품연구원
3. 한국천문연구원	13. 삭제 <2011.12.31>
4. 한국생명공학연구원	14. 한국지질자원연구원
5.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15. 한국기계연구원
6. 한국한의학연구원	16. 한국항공우주연구원
7. 한국생산기술연구원	17.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8. 한국전자통신연구원	18. 한국전기연구원
9. 한국건설기술연구원	19. 한국화학연구원
10. 한국철도기술연구원	20. 한국원자력연구원

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(이하 “시행계획수립지침“이라 한다)을 정하고,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,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,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,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, 변경된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)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·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관계행정기관장“은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“으로, “기본계획“은 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“으로 본다.

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사업위치: 도내 일원
- 사업기간: 2012~ (매년 지속 추진사업)
- 내 용: 충청북도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및 과학기술 문화확산 추진 사업비

3. 관련조문: 안 제5조부터 제7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과학기술진흥 및 과학기술 문화확산 사업의 추진

나. 추계 결과

-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: 24억원(국비 12, 도비 12)
- 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: 11억원(국비 9, 도비 1, 기타 1)
- 연구과제 제안 공모: 4억원(도비 4)
- 산업자원 안전관리: 3억원(도비 3)

다. 재원조달방안: 42억원

- 국비 21억, 도비 20억, 기타 1억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: 붙임

6. 작성자: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장 이 두 표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’12년까지)	2차년도 (2013년)	3차년도 (2014년)	4차년도 (2015년)	5차년도 (2016년)	계
세 입		0	0	0	0	0	0
		0	0	0	0	0	0
세 출		1,126,000	736,000	726,000	816,000	816,000	4,220,000
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		910,000	400,000	380,000	400,000	400,000	2,490,000
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		216,000	216,000	216,000	216,000	216,000	1,080,000
연구과제 제안 공모		0	80,000	80,000	100,000	100,000	360,000
충북과학기술포럼 구성 운영		0	40,000	50,000	100,000	100,000	290,000
재원 조달		1,126,000	736,000	726,000	816,000	816,000	4,220,000
의존 재원	소 계	590,000	380,000	360,000	380,000	380,000	2,090,000
	보조금	590,000	380,000	360,000	380,000	380,000	2,090,000
	지방교부세	0	0	0	0	0	0
자체 수입	소 계	518,000	338,000	348,000	418,000	418,000	2,040,000
	지방세	518,000	338,000	348,000	418,000	418,000	2,040,000
	세외수입	0	0	0	0	0	0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광특회계							
시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18,000	18,000	18,000	18,000	18,000	90,000

